보상위원회 규정

조문번호

[총 칙]
제 1 장 통칙
제 1 조 (목적)
제 2 조 (적용범위)
제 3 조 (권한)
제 2 장 구성
제 4 조 (구성)
제 5 조 (위원장)
제 3 장 회의
제 6 조 (소집권자)
제 7 조 (소집절차)
제 8 조 (결의방법)
제 9 조 (부의사항)
제 10 조 (관계인의 출석)
제 11 조 (자료제출요구권 등)
제 12 조 (통지의무)
제 13 조 (의사록)
제 4 장 보칙
제 14 조 (간사)
제 15 조 (규정의 개폐)
[부 칙]
제 1 조 (시행일)

보상위원회 규정

제정 2023. 5. 18.
개정 2025. 12. 22. 2026. 4. 3.

[총 칙]

제 1 장 통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클래시스(이하 '회사'라고 한다)의 이사회 내에 설치된 보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권한)

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상정할 등기이사의 보수한도 등 제 9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, 의결한다.

제 2 장 구성

제 4 조 (구성)

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
② 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구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
③ 위원이 임기만료, 사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 2 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위원장)

① 위원장은 제 8 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에서 선임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위원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의

보상위원회 규정

제 6 조 (소집권자)

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7 조 (소집절차)

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7 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8 조 (결의방법)

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③ 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의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9 조 (부의사항)

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주주총회에 상정할 등기이사 보수의 총 한도
2. 집행임원 보수의 총 한도
3. 집행임원 개별보수 심의
4.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
제 10 조 (관계인의 출석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보상위원회 규정

제 11 조 (자료제출요구권 등)

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12 조 (통지의무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3 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제 13 조 (의사록)

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4 장 보칙

제 14 조 (간사)

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 15 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[부 칙]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3 년 5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.

[부 칙]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5 년 12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.

보상위원회 규정

[부 칙]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6 년 4 월 3 일부터 시행한다.